법제처

[2023. 6. 28]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457-06

1000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전라도천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2023년 11월(제373호)

#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JeollaNamdo

# Contents


## Ⅰ 새로운 판례

1. 손해 배상 ····· 7
2. 소유권 이전 등기 ····· 9
3.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등 ····· 11
4. 손해 배상 ····· 14
5. 명예훼손 ····· 16

##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이축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 ····· 25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 30

##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수리처분 취소청구(제3자) ····· 35
2. 민원회신 취소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화 의무이행청구 ····· 43

##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1.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 49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51
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4
4.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 56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58

6.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 60
7.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61
8.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63
9.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 65
10.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67

## Ⅴ 법무단신

1.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 69
2.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자의적으로 호봉 부여했어도…"노사합의 있었다면 차별 아니다" ·· 71
3.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 72
4.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 74
5.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76
6.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 78
7.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 80
8.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헌재, 헌법소원 기각 ····· 82
9.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 84
10.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 86

##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88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90

## Ⅶ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임금의 산정-② ····· 93
· Calculation of wages-② ····· 95
· 工资的计算-② ····· 99
· Tiền lương-② ····· 102

## Ⅷ 법제처 법나들이

· 소음 때문에 못 살아! ····· 106

# Ⅰ. 새로운 판례

## 1 손해 배상

*** 대법원 2021다259510**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

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들(승객들)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항공운송인)를 상대로 약 19시간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이상 피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2 소유권 이전 등기

*** 대법원 2023두42584**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등 참조).

☞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삼척향교를 소유하며 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인 원고에 대해 삼척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의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 의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 및 자기책임 원리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

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하여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3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등

*** 대법원 2023도8752**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3.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참조).

☞ 경찰이 피해자 甲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로 발부된 제1영장에 따라 2022. 6. 24.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집행을 완료('1차 압수·수색')한 후 2022. 7. 27. 그 복제본이 저장되어 있던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乙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2차 압수·수색')하였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제2영장을 발부받아 2022. 9. 10. 다시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乙, 丙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3차 압수·수색')한 사안임

☞ 원심은,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전자정보가 제1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1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2차 및 3차 압수·수색에 따

른 전자정보 사이에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이후 제2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같은 증거가 압수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① 제1영장은 피해자 甲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2022. 6. 24.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차 압수·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② 제1영장을 이용한 2차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통상적·원칙적인 집행절차가 아니었던 점, ③ 2차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④ 3차 압수·수색은 1차 압수·수색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경찰관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제2영장을 집행한 것인바, 이는 제1영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⑤ 경찰이 3차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에게 제2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영장 사본의 교부의무와 3차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의무까지 모두 해태하는 위법이 있는 점, ⑥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이와 달리 전자정보에 대한 2, 3차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4 손해 배상

*** 대법원 2021다213316**

[폐쇄형 기관 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 1.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판단 방법,
2. 의료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아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폐쇄형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임

☞ 망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아의 폐가 위축되어 있고 폐렴과 더불어 폐실질에 다수의 기종성 변화와 가슴막 아래에 다수의 공기집(subpleural blebs)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이 사건 기관흡인 이전에 심한 모세기관지염으로 인한 말초 기관지의 염증, 고유량산소, 기계호흡 등에 의한 폐포벽의 손상으로 망아의 폐에 기종성 변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 망아에게 이차성 기흉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이것이 긴장성 기흉(tension pneumothorax)으로까지 발전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원인에 관하여, 기흉의 경우 기도손상이 있어야 하나 망아에게서 기도손상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기흉을 원인에서 배제하며 기관 내 튜브가 발관된 사정만을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망아의 폐 상태를 고려하면 반드시 망아에게 기도손상이 있어야만 기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과 같이 기흉을 원인에서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망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망아의 기관 내 튜브가 발관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튜브의 발관과 망아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5 명예훼손

*** 대법원 2017도18697**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

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사용상표 1

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이 유사하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1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Ⅱ.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허가 대상으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함(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 참조))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회 답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의 “공익사업” 뒤에 괄호를 두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위치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각주: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 공원·녹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철도·도로·수도·전기공급설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같은 호 나목), 공항·항만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같은 호 다목),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같은 호 라목) 등 ②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제4절 3-4-1 등 참조)한 후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서도 같은 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되었고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공장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라면, 해당 공장은 같은 호에 따른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2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종교시설 등의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의 이축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각주: 법제처 2020. 3. 4. 회신 19-0709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3. 25. 회신 15-0694 해석례 참조)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호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같은 호에 따른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는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54호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장·종교시설 등의 경우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곤란하여 종전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점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도 이축을 허용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각주: 2011. 9. 16. 법률 제

110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및 2009. 12. 8. 의안번호 제1806909호로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이는 특정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그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의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말함.)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례 및 2016. 11. 2. 의안번호 제2003222호로 발의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공장은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라. (생 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 9.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⑪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 다. (생 략)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생 략)

**사례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8조에서는 신고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패행위 신고(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오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본문),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함.)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각주: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제1호)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서는 공단은 같은 영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

상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각주: 해당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상당하다’라는 표현은 ‘해당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각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p.71-72 참조), 같은 항에 따른 “보상금” 그 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는 같은 법이 2019년 4월 16일 법률 제1632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국고로 상환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8. 1. 5. 의안번호 제2011297호로 제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62

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그 취지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재정 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이들로부터 상환받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수입 증대분의 귀속 주체와 보상 지출의 주체를 연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2023년) p.145-146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금액의 차액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원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제4항)은 동일한 원인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적으면 지급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일부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대해 보상금 등이 지급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 간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생 략)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④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 사례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각주: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하며,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어업인 주택을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가목)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나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대주'는 일반적으로 한 가구인 세대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각주: 「주민등록법」 제1조 참조)으로 마련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도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서도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주'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의 요건을 "농업

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이라고만 규정하였는데, 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각주: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제34조제4항제1호(각주: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농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제29조제4항제1호로 이동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됨)에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개정한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22. 6. 28.〉**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2. (생 략)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가. ~너. (생 략)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
| | 농업진흥지역 안 | 농업진흥지역 밖 |
|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 | 100 |

머.~ 푸. (생 략)

# Ⅲ. 행정심판 재결사례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수리처분 취소청구(제3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외 ***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배출시설 1,097㎡, 퇴비사 393.5㎥, 저장조 493.95㎥)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0.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축사) 중 일부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데, 2020. 1.경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고 2020. 1.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 3.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외 ***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3.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청 구 인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는

① 가축분뇨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지위를 승계한 ***에게 가축사육 의사 타진을 하지 않고 원 수허가자인 ***에게 인감 및 인감도장을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 점,

②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당초 허가권자인 ***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이 대리 작성하여 민원접수하고 허가취소한 점,

③ 이 사건 변경신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돈사시설 폐쇄, 변경 전 돈사허가 존재, 변경 후 돈사허가 미존재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명백히 돼지사육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적용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이 언급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가)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제3자 청구로, 2019. 5. 2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폐쇄)'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은 2020. 1. 13.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청구서와 본문에 기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기재한 내용과 달리 실제 2020. 1.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를 '허가취소'라고 주장(언급)하나, 이 사건 처분은 '허가취소'가 아니다. 다) 이 사건 행정심판과 관계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는 '전남 **군 ***면 **리 산** 외 1필지(233), ***면 **리 ***'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계된 허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 **리 ***, ***-*'에 위치한 건축물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현재 기준 ***면 **리 ***, ***-* 위치의 건축물은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허가가 되어있지 않다.

라) 위 그림처럼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는 배출시설 1,097㎡[총 3동 합산, 391㎡(1동)+391㎡(1동)+315㎡(1동)]이었고, 이 사건 변경신고(폐쇄) 수리 이전까지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상 설치·운영자는'***'으로 허가가 되어있었다. 또한, 2019. 5. 20. 변경신고 수리 당시 건축물 중 315㎡(1동)의 소유권은 '***'에게 있었다.

마) 2019. 5. 16. 변경신고서(폐쇄) 작성 당시 ***면사무소에서 ***이 직접 인감을 떼어 주었고, 직접 인감도장을 변경신고서 등에 찍었다.

바)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주장한다.

2) 이 사건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에 따르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명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지위를 승계한 ***(2016. 3. 10. 소유권 이전)에게 가축사육 의사 타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원 수허가자인 ***에게 인감 및 인감도장을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 건으로, 변경신고서는 당초 허가권자 ***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민원 접수를 하여 허가취소한 건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축분뇨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유권해석결과 "지위승계 효력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발생 시점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바, 실질적 배출시설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 허가자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위가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를 살펴보면, “현행 가축분뇨법(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에 비추어보면”이라는 판결이 있다. 즉 이는 현행 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그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보면 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양도·양수계약은 단순 매매계약과 달리 그 건축물에 귀속된 허가 등의 권리까지 양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허가권의 소유주체의 이전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라) 따라서 지위승계신고가 없는 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권은 당초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마) 이러한 이유로 당시 가축분뇨허가자에게 변경신고서(폐쇄)를 받은 것이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축사육 의사를 타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의 건이지 허가취소한 사항이 아니고, 변경신고서에 당시 수허가자는 ***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3) 변경사유를 보면 변경사유 돈사시설 폐쇄, 변경 전 돈사허가 존재, 변경 후 돈사허가 미존재로 되어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는 명백히 돼지사육시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청인 피청구인이 이런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가 취소된 것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를 보면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할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본다. 이 사건 변경신고는 이를 적용하였다.

‘폐쇄’의 사전적 의미는, ‘시설 따위를 없애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다’이다.

즉 건축물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돼지 사육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변경신고(폐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해당 돈사는 10년 이상 미사육중이었으며, 시설도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실질적 폐쇄됨이 확실하였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다. 마.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특히,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권자가 법인인 경우 허가권은 법인으로 변동이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대상이며,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므로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5)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엄연히 소유권이 ***로 되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변경신고와 관계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상 배출시설은 1,097㎡(총 3동 합산)로 변경신고 처리 당시 그 중 1동인 315㎡(돼지사육시설)의 건축물 소유권은 '***'에게 있었다.

물론, 이 사건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권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 소유권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이 주장 역시 불필요하다.

6)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대리인 ***)는 2020. 1. 13. 이 변경신고(폐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0. 1. 13.로 법적으로 가능한 심판청구의

기간이 한참 지났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축분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위승계를 하여야 그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권은 당초 허가권자에게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 따라 변경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 한 제3자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 4. 관계 법령

1) 가축분뇨법 제14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행정심판법」제27조

## 5. 판 단

###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은 2019. 5. 16.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배출시설 1,097㎡, 퇴비사 393.5㎥, 저장조 493.95㎥)에 대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외 ***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축사) 중 일부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데, 2020. 1.경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고 2020. 1.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21. 3. 1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한 청구이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95누1153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 2021. 3. 9.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 외 ***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폐쇄)를 수리처분은 2019. 5. 20.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축사) 중 일부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인데, 2020. 1.경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고 2020. 1. 13.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3.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은 최소한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날인 2020. 1. 13.이고, 심판청구일인 2021. 3. 10.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

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하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민원회신 취소 및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화 의무이행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9.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무효화한다.**

##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것은 무효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무효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19.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 19. 이 사건 민원회신 취소와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무효화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9.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무효화한다.

## 3.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관리소장의 선관위원 위촉이 부당함을 알리고 무효화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리규약 및 유사 판례에 적합하다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답변 및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2020. 8. 1. ~ 2022. 7. 31.) 입주자 대표회의가 *** 동 대표 ***의 민원 제기 및 수사 요청으로 지금껏 구성되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임기 중 사퇴하여 2020. 8. 1.부터 *** 전임 입주자 대표 회장이 새회장 선출 전까지 아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권한도 없는 관리소장이 전임회장을 무시하고 선관위원들을 구성하여 위촉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과 제40조 제3항에 선관위원 위촉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관리소장)는 운영주체(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가 전혀 없을 때에만 최초,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운영주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 5명 중 통장협의체에서 1명을 추천받고, 나머지 4명은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 의한 추천도 받지 않고 선착순 공개모집으로 선관위원을 구성하고, 2020. 10. 21.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것도 묵인하였다.

5) 피청구인은 **아파트 신문(2018. 6. 5.)의 유사 판례 기사를 인용하였으나, 아파트관리 신문(2020. 1. 16.)의 최근 유사 판례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 제51민사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만료됐어도 선관위원 해촉, 위촉 권한은 새 회장 선임 전까지 전임회장에게 있으며, 전임회장이 선관위원 해촉·위촉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임회장 임기가 만료된 것을 회장 궐위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답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관리소장의 선관위원 위촉은 무효이므로 공동주택 감독관청으로써 책임감 있게 무효화 처리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원인행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질의민원으로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제12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후 2021. 1. 30. 현재까지 임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해 제12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대행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인용한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 업무대행자(전임 회장)가 아니면 달리 업무 수행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이미 업무대행자를 관리소장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제35조 제1항)”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제36조 제1항)”으로 하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

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제40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궐위'란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 또는 그 빈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즉, 제40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 5명 중 1명이라도 빈자리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위촉 주체를 판단함에는 제40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에 대해서만 문의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묵인하였다는 사항은 부적합한 청구이다.

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위촉 업무대행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사항은 단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4.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5. 판 단

###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길 * 소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21. 1.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것은 무효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무효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1. 1. 19.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21. 1. 19. 이 사건 민원회신 취소와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무효화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 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 외의 사항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Ⅳ. 생활법률 상담사례

## 1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

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
|---|---|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 |
|---|---|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br><br>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br>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br>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br>·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br><br>·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br>·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br>·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함. 이하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br><br>1.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고하지 않을 것<br>2.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4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결근의 판단 기준**

☞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를 둔 경우**

☞ 회사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됩니다.

◇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누적해서 총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6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8**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9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10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 신청하는 경우

# Ⅴ. 법무단신

## 1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2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자의적으로 호봉 부여했어도… "노사합의 있었다면 차별 아니다"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직이나 경력직 등과 달리 자의적으로 호봉을 부여했더라도 기존 일반직과 동일 비교집단에 속해있지 않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 송영복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A 씨 등 6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41172).

A 씨는 2013년 1월 서울시설공단에 특정직(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고 B 씨 등 5명은 각기 1999년~200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8년~2011년 특정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공단을 포함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했고, 2014년 12월 공단 노조와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공단은 2015년 4월 A 씨 등을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했고, 전환 전후를 비교해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고자 A 씨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호봉을 낮췄다.

이에 A 씨 등은 "노사합의에서 규정한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이라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일부 호봉만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등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차등해 부여한 공단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기존 일반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 바 있더라도 '대체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 임용경로에도 차이가 있다"며 "급격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호봉 산정에서만 예외를 두었을 뿐 다른 근로조건은 일반직 직원 사이에 동등하게 유지됐으므로 차별의 정도도 최소한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3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등급판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DB손해보험이 A 씨의 유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32709).

A 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1, 2, 3등급)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같은달 8일 A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한 후 13일 뒤 A 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A 씨는 공단에서 실사를 한 날 밤 11시25분경 사망했고, A 씨의 유족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확인되면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며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더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4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 5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 6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D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이후 A 씨의 유족은 C사, D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일시금)이 포함됐다. 장의비는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회사에서 유족에게 3억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공단에 유족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의 유족 B 씨는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역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7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판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도6411(2023년 9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침해범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3월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 8

##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 9 방통위의 'SNI 차단 방식 적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 요구… "합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차단 방식을 적용해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경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표시)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케이티(KT)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기존의 차단 대상 및 방통위가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2019년 2월 11일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 아니라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이용자인 A 씨 등은 이러한 시정 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안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SNI를 확인해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10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

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Ⅵ. 최근 개정 시행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49호, 2023. 11. 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중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오염방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과 관련한 부담금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에서의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오염방제 관련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 대통령령 제3384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94조제2항제8호"를 "제9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3.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94조제4항제1호의3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2.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약제에 대한 검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제9조).

마.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제10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제14조).

차.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 유전적 질환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제15조).

카.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도록 함(제16조).

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법률 제19816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Ⅶ.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임금의 산정-②

###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휴업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재해보상금(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규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
| --- |
| Q: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기간을 산입해야 하나요? |

A: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참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Calculation of wages-①

- "Average wage" refers to the average amount of wages paid over a certain period, and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severance pay and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 What is "average wage"?
  - The term "average wages" means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paid to a relevant employee during 3 calendar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grounds for calculating his or her average wages occurred by the total number of calendar days during the three months.(Main text of Subparagraph 6, Article 2(1),「Labor Standards Act」)

- Salaries and allowances to which the average wage is applied
  - The average wage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following allowances or salaries.
  - Retirement allowance (Article 8(1),「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 Shutdown allowances (Article 46, 「Labor Standards Act」)
  - Annual paid leave (Article 60(5), 「Labor Standards Act」)
  - Accident compensation (Articles 79 to 85,「Labor Standards Act」)
  - Punitive wage cut (Article 95,「Labor Standards Act」)
  - Job search benefits (Article 45,「Employment Insurance Act」)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rticle 36 and 52, etc.,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The average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wage for the 3 months prior to the date of occurrence of the reason for calculation by the total number of days in that period.

- How to calculate average wage
  - The average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wage for the 3 months prior to the date of occurrence of the reason for calculation by the total

number of days in that period.(Main text of Subparagraph 6, Article 2(1), 「Labor Standards Act」)

| Method of calculating average wage for bonuses with a calculation period of one year |
|---|
| Q: In the case of bonuses with a calculation period of one year, how should the perio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wage?<br><br>A: In the case of bonuses, if payment conditions are specified in advance in collective agreements or employment rules, or if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paid continuously is recognized as customary, regardless of whether the bonus was paid for the 3 months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reason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you can divide the full amount received during the 12 months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cause by 12 months and include 3 months' worth into the calculation range of the average wage. |

■ Periods and wage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wage

- Where a period for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such period and wages paid during that period shall be subtracted respectively from the period and the total amount of wage serving a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 (Article 2(1),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a worker who is under probation after entering into a labor contract commences probation
  · When a business shuts down due to a cause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Article 46, 「Labor Standards Act」)
  · Maternity leave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miscarriage/stillbirth leave. (Article 74,「Labor Standards Act」)
  · An employer shall provide necessary medical treatment at his or her expense or bear corresponding expenses for an employee who suffers from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Article 78,「Labor Standards Act」)
  · The period of childcare leave. (Article 19,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 The period of industrial actions. (Subparagraph 6, Article 2,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A period of absence or absence from work to fulfill military services, reserve forces, or civil defense obligations. However, it is not excluded if wages are paid during the period
· Period of work suspension with the approval of the employer due to injury, illness, or other reasons other than work

■ Minimum limit of average wage
- When the amount calculated is lower than that of the ordinary wages of the employee concerned, the amount of the ordinary wages shall be deemed his or her average wages. (Article 2(2),「Labor Standards Act」)

The average wage to be applied when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for suspension of work and disability is adjusted according to changes in wages of workers in the same type of occupation.

■ Adjustment of average wage
- The average wage applicable to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such as compensation for suspension of work (Article 79, 「Labor Standards Act」), disability(Article 80, 「Labor Standards Act」), survivors (Article 82, 「Labor Standards Act」), funeral expenses(Article 83, 「Labor Standards Act」), and installment compensation (Article 84, 「Labor Standards Act」). etc. shall, when the average amount of monthly ordinary wage per employ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verage amount") paid to employees in the same business category in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to which the relevant employee belongs has changed by at least 5/100 from the average amount paid in the month when an injury or a disease occurs, be such amount increased or decreased at the a foresaid rate of change, but such rate shall apply to the month immediately following the month of occurrence of grounds for change and the months subsequent thereto. (Main text of Article 5(1),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Provided, that the second or latter adjustment of average wage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amount of the month in which a cause for immediately preceding change occurred. (Proviso to Article 5(1),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Where the business or workplace is permanently closed down
  - Where the business or workplace to which the relevant employee belongs is permanently closed down, the adjustment of average wage shall be based on a business or workplace with the same business type and scale as at the time when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was inflicted on the employee. (Article 5(2),「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When there is no employee engaged in the same occupational category
  - If there is no employee engaged in the same occupational category as the relevant worker, the adjustment of the average wage as described above shall be based on employees engaged in the occupation of similar category. (Article 5(3),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Calcul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s which shall be paid to an employee who suffers from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 The average wage applicable to the comput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s which shall be paid to an employee who suffers from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shall be the average wage adjusted in accordance. (Article 5(4),「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 工资的计算-②

- “平均工资”是指，在一定期间所支付的工资平均金额，是计算退职金或停业津贴等的标准。
  - “平均工资”是指？
    - “平均工资“是指，发生计算事由之日前3个月向该劳动者支付的工资总额除以该期间总天数的金额（《劳动基准法》第2条第1项第6号正文）。
  - 适用平均工资的薪酬及津贴等
    - 平均工资是计算下列津贴或薪酬等的标准：
      - 退职金（《劳动者退职工资保障法》第8条第1项）；
      - 停业津贴（《劳动基准法》第46条）；
      - 带薪年休假津贴（《劳动基准法》第60条第5项）；
      - 灾害补偿金（《劳动基准法》第79条至第85条）；
      - 减薪制裁的限制（《劳动基准法》第95条）；
      - 求职工资（《雇佣保险法》第45条）；
      - 工伤保险工资（《工伤保险法》第36条、第52条等）。
- 平均工资按照发生计算事由之日前3个月的总工资除以该期间总天数计算。
  - 平均工资计算方法
    - “平均工资”是指，发生计算事由之日前3个月向该劳动者支付的工资总额除以该期间总天数的金额（《劳动基准法》第2条第1项第6号正文）。

| 计算期间为1年的奖金的平均工资计入方法 |
| --- |
| Q：计算期间为1年的奖金，在计算平均工资时怎么计入期间呢？<br><br>A：奖金在集体合同、就业规则等已明确指出支付条件的，或认为是常规持续支付的，无论在发生平均工资计算事由之日前3个月是否已支付，在发生事由之日前12个月支付的总额除以12个月后，将3个月的部分计入平均工资的计算范围即可。<br><br>《来源：雇佣劳动部，参照《劳动基准法质疑回示集》劳动基准政策科-1217，2017.2.15》 |

- 计算平均工资时被排除的期间和工资
  - 载明工资的劳动条件

- 在平均工资计算期间，符合下列期间之一的，该期间和在该期间支付的工资各从作为平均工资计算标准的期间和工资总额中排除（《劳动基准法施行令》第2条第1项）：
  · 签署劳动合同后实习中的劳动者，自实习开始之日起3个月内的期间；
  · 因用人单位的承担责任为由停业的期间（《劳动基准法》第46条）；
  · 产前后休假及流产、死产休假期间（《劳动基准法》第74条）；
  · 因工受伤或为管理疾病而停业的期间（《劳动基准法》第78条）；
  · 育儿休职期间（《关于支持男女雇佣平等和工作、家庭并立的法律》第19条）
  · 争议行为期间（《工会及劳动关系调解法》第2条第6号）；
  · 为履行兵役、后备军或民间防卫义务而休职或未劳动的期间。但，在该期间被支付工资的，将不排除在外；
  · 因工作之外的受伤或疾病及其他事由，获用人单位批准后停业的期间。

■ 平均工资的最低限度

- 根据平均工资计算方法所计算的金额低于该劳动者标准工资的，将该标准工资额作为平均工资（《劳动基准法》第2条第2项）。

● 计算停业补偿金、工伤补偿金等时所适用的平均工资，将根据同业劳动者的工资变动而进行调整。

■ 平均工资的最低限度

- 计算停业补偿金（《劳动基准法》第79条）、工伤补偿金（《劳动基准法》第80条）及遗属补偿金（《劳动基准法》第82条）、丧葬费（《劳动基准法》第83条）、一次性补偿金（《劳动基准法》第84条）等时所适用的平均工资，在该劳动者所属经营活动或经营场所，对从事相同岗位的劳动者支付的标准工资人均1个月平均额（下称"平均额"）较发生该受伤或疾病的当月支付的平均额在超过100分之5的范围内有变动的，则适用根据该变动比率上涨或下调的金额，但自发生该变动事由的下个月开始适用（《劳动基准法施行令》第5条第1项正文）。
- 但，第2次以后调整平均金额时，则将发生前一次变动事由之月的平均额作为计算标准（《劳动基准法施行令》第5条第1项但书）。

■ 经营活动或经营场所被撤销的

- 调整平均工资的，当该劳动者所属的经营活动或经营场所被撤销时，较该劳动者发生工伤或疾病时的经营活动或经营场所，以相同类型、相同规模的经营活动或经营场所为准（《劳动基准法施行令》第5条第2项）。

■ 尚无劳动者从事相同岗位的

- 根据上述内容调整平均工资的，没有劳动者与该劳动者从事相同岗位时，以从事类似岗位的劳动者为准（《劳动基准法施行令》第5条第3项）。

■ 为因工受伤人支付的退职金计算

- 就因工受伤或患病的劳动者，根据《劳动者退职工资保障法》第8条计算退职金时适用的平均工资，以根据上述标准调整的平均工资为准（《劳动基准法施行令》第5条第4项）。

## Tiền lương-②

- "Tiền lương bình quân" là số tiền lương bình quân được trả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và là tiêu chuẩn để tính trợ cấp thôi việc hoặc tiền lương ngừng việc.

▪ "Tiền lương bình quân" là gì?

- "Tiền lương bình quân" là số tiền khi chia tổng số tiền lương trả cho người lao động trong 03 tháng trước ngày xảy ra lý do cần phải tính cho tổng số ngày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Nội dung chính Điểm 6 Khoản 1 Điều 2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iền lương và trợ cấp v.v. áp dụng tiền lương bình quân

- Tiền lương bình quân là tiêu chuẩn để tính lương hoặc các khoản trợ cấp sau:

· Trợ cấp thôi việc (Khoản 1 Điều 8 Luật Đảm bảo trợ cấp thôi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 Lương ngừng việc (Điều 46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ợ cấp nghỉ phép năm có lương (Khoản 5 Điều 60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iền bồi thường thiên tai (từ Điều 79 đến Điều 85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Hạn chế về xử phạt cắt giảm lương (Điều 95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ợ cấp tìm việc (Điều 45 Luật Bảo hiểm việc làm)

· Tiền bảo hiểm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Điều 36, Điều 52 Luật Bảo hiểm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 Tiền lương bình quâ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ổng số tiền lương của 03 tháng trước ngày xảy ra lý do tính cho tổng số ngày làm việc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 Cách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 Tiền lương bình quâ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ổng số tiền lương được trả cho người lao động trong vòng 03 tháng trước ngày xảy ra lý do cần phải tính cho tổng số ngày làm việc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Nội dung

chính Điểm 6 Khoản 1 Điều 2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Cách gộp lương trung bình của tiền thưởng trong 01 năm |
| --- |
| Q: Đối với tiền thưởng được tính trong 01 năm, phải tính gộp thời gian như thế nào khi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
| A: Đối với tiền thưởng, nếu các điều kiện thanh toán được quy định trước trong các thỏa ước tập thể, nội quy lao động, v.v., hoặc được công nhận rằng đã được trả liên tục theo thông lệ, bất kể tiền thưởng có được trả trong 03 tháng trước ngày xảy ra lý do để tính lương bình quân hay không, tiền thưởng được tính bằng cách chia tổng số tiền được nhận trong 12 tháng trước ngày xảy ra lý do cần tính cho 12 tháng, sau đó gộp vào phạm vi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của 03 tháng. |
| <Nguồn: Tham khảo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Tuyển tập Hỏi và Đáp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Phòng Chính sách Tiêu chuẩn lao động-2017, 15.02.2017> |

■ Khoảng thời gian và số tiền lương bị loại trừ khỏi cách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 Trong thời gian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nếu có khoảng thời gian nào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khoảng thời gian đó và khoản tiền lương đã trả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sẽ lần lượt bị trừ ra khỏi tổng số tiền lương và khoảng thời gian được dùng làm căn cứ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Khoản 1 Điều 2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trong vòng 03 tháng kể từ ngày người lao động bắt đầu thử việc sau khi giao kết hợp đồng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ngừng việc do nguyên nhân từ phí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Điều 46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nghỉ trước và sau khi sinh con, thời gian nghỉ do sảy thai, thai chết lưu (Điều 74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ngừng công việc để điều trị thương tật hoặc bệnh tật có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Điều 78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nghỉ nuôi con (Điều 19 Luật về Bình đẳng giới trong tuyển dụng và hỗ trợ cân bằng giữa công việc và gia đình)

· Khoảng thời gian đình công (Điểm 6 Điều 2 Luật Công đoàn và Điều chỉnh quan hệ lao động)

· Khoảng thời gian không thể làm việc hoặc nghỉ việc để thực hiện nghĩa vụ

quân sự, quân dự bị, nghĩa vụ dân phòng. Tuy nhiên, khoảng thời gian này không bị loại trừ nếu đã được trả lương trong khoảng thời gian này

· Khoảng thời gian ngừng làm việc do thương tật, bệnh tật không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các lý do khác được phép ngừng làm việc dưới sự đồng ý củ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 Tiền lương bình quân tối thiểu

- Nếu số tiền được tính theo cách tí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nhỏ hơn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số tiền lương bình thường sẽ được dùng làm tiền lương bình quân (Khoản 2 Điều 2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iền lương bình quân áp dụng khi tính các tiền bồi thường do ngừng việc, bồi thường thương tật, v.v. được điều chỉnh theo biến động tiền lư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cùng một ngành nghề.

- Điều chỉ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cấp cho người lao động văn bản (bao gồm văn bản điện tử) ghi rõ các thông tin về tiền lương như hạng mục, cách tính và cách trả lương.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thay đổi vì những lý do được quy định tại Điều 8.2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chẳng hạn như thay đổi theo nội quy lao động, thỏa ước tập thể, nếu người lao động có yêu cầu,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vẫn phải cấp cho người lao động đó (Khoản 2 Điều 17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uy nhiên, khi điều chỉ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sau kỳ thứ 2, tiêu chuẩn tính toán dựa trên số tiền bình quân của tháng phát sinh lý do dẫn đến sự biến động của kỳ trước (Quy định Khoản 1 Điều 5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hoặc nơi làm việc bị đóng cửa

-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chỉ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khi doanh nghiệp hoặc nơi làm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bị đóng cửa, doanh nghiệp hoặc nơi làm việc có cùng loại hình và quy mô với doanh nghiệp hoặc nơi làm việc đó vào thời điểm người lao động bị thương tật hoặc bệnh tật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sẽ được dùng làm tiêu chuẩn (Khoản 2 Điều 5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Trường hợp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cùng ngành nghề
  - Căn cứ vào nội dung trên,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chỉnh tiền lương bình quân, khi không có người lao động cùng ngành nghề với ngành nghề của người lao động được tính, người lao động có ngành nghề tương tự với ngành nghề đó sẽ được dùng làm tiêu chuẩn (Khoản 3 Điều 5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Cách tính trợ cấp thôi việc phải trả đối với người bị thương và bệnh tật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bệnh hoặc bị thương tật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khi tính trợ cấp thôi việc theo Điều 8 Luật Đảm bảo trợ cấp thôi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 tiền lương bình quân được áp dụng sẽ được tính bằng tiền lương bình quân được điều chỉnh theo tiêu chuẩn bên trên (Khoản 4 Điều 5 Nghị định thi hành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 Ⅷ. 법제처 법나들이

## 소음 때문에 못 살아!

아오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저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야?!
쿵
쿠르르
구성 | 이용일

AED
힘들게 앵무새 사육
번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 소음 때문에
앵무새들이 영 힘이 없어
보여서 큰일이네..

앵무새들이
잘 있어야 할 탠데…
CARD

아닛?!
허억!!

내
앵무새들이?!!
골골골
드
등

며칠 뒤, 시청
크아아!!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하하…
자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공사 소음 때문에
제 앵무새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진정이
되겠냐고요!
워어 워어

참내...
저희는
생활소음규제기준*
다 지켜가면서 공사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주간 70dB(A) 이하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정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건설공사현장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